

# 부천테크노파크2단지 선거관리규정

제정: 2003.03.24

개정: 2005.03.08

개정: 2007.03.12

개정: 2014.03.17

개정: 2020.03.09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부천테크노파크 2단지(이하 "단지"이라 칭한다) '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12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입주사대표 등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 성)**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사대표회의에서 공고하여 5명 이내의 인원으로 하며 입주사 대표 중에서 선거관리를 중립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신청을 받아 선거관리위원을 선출하되, 위원등록 없을 시 대표회의 임원으로 구성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4.03.17)
2. 회장 입후보자는 1항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3. 입주사대표회의의 일괄사퇴 또는 구성원의 업무해태로 규약에 의거 선출일이 되어도 새로운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규약과 규정에 적합한 선거관리위원을 입주사지원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칭한다)모집하여 구성한다.

**제3조 (기 능)**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광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 **제4조 (임기 및 결원보충)**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 후 3일 이내에 해산하며 선거록을 입주사대표회의에 인계한다. 입주사대표회의 일괄사퇴 또는 성원미달, 미구성시는 본부장에게 인계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 시에는 본 규정 제2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입주사대표회의 및 입주사지원본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한 선거관리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며 제반선거 사무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협조한다.

#### **제6조 (결 의)**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로 한다.

#### **제7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선거광고)**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각 선거관리위원 5분의 3이상의 요구로 선거관리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집행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중도사퇴 등의 이유로 보궐선거를 할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할 수가 있다.

**제8조 (비 용)** 선거에 관한 비용은 입주사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입주사대표회의 업무추진비로 운용한다.

**제9조 (중 립)**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엄정중립을 유지하여야 하며 특정후보자의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제 3 장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제10조 (선거권)

① 구분소유권자의 선거권은 소유한 지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선거권을 부여 받으며 지분은 각 구분소유를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기준평수 30평당 1표로 하며, 구분소유의 총평수를 기준평수로 나누어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기준평수 30평 미만의 구분소유권자는 1표로 한다.

② 입주사대표회의 회장 및 동대표 선출과 관련한 선거권은 점유자가 행사한다.

(2005.3.8 본항개정)

### 제11조(피선거권)

① 입주사대표회의 회장 경우 구분소유자이고 동별대표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입주사 10개사 이상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본항개정 07.03.1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자는 동별대표의 피선거권이 없다.

1. 구분소유권이 없는 자. 단 203동, 관리동 상가동 대표는 제외한다. (본항개정 07.03.12 / 2020.03.09)
2.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자
5. 당 단지에 1년 이상 실지의 사업(사업자등록증 기준)을 영위하지 아니한 자 (본항개정 05.03.08 / 07.03.12)
6. 입주사 3분의 2이상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불신임한자 및 규약 제16조 6항 1호에 의거 입주사대표회의에서 해임된 자

## 제 4 장 선거구와 입후보

### 제12조 (선거시기)

- ① 입주사대표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② 동별 입주사 대표는 임기만료 15일 이전까지 선출한다.

### 제13조 (선거구)

- ① 단지 입주사대표회의 회장은 1인 선출한다.
- ② ~~공장동 201동, 202동을 1선거구로 하고 1선거구에서 입주사 대표를 6명을 선출~~

한다. (관리규약 개정으로 ~~4명으로 조정~~)

② 각 동 2명의 동대표를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입후보자가 없을 시 201동, 202동을 1선거구로 하여 4명을 선출한다. <문구수정><후구신설>(개정: 2020. 03. 09)

~~③ 공장동 3동을 2선거구로 하고 동별 입주사대표 2명을 선출하고, 부천시(부천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 당연직 1명을 추가한다. (관리규약 개정으로 1명으로 조정)~~

③ 공장동 3동을 2선거구로 하고 동별 입주사대표 1명을 선출하고, 1명은 부천시(부천산업진흥원 원장) 당연직 1명을 추가한다. <문구수정> (개정 : 2020. 03. 09)

~~④ 부대동(상가 및 기숙사)과 관리동을 합하여 3선거구로 하고 동별 입주사대표 1명을 선출한다.~~

④ 부대동(상가 및 기숙사)과 관리동을 합하여 3선거구로 하고 입주사대표 1명을 선출한다. 다만, 부대동의 경우 입후보자가 없을 시 부대동과 관리동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임차인)도 입후보 할 수 있도록 한다.<후구신설>(개정 : 2020. 03. 09)

#### 제14조 (입후보자의 등록)

① 입후보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 등록신청서(서식 제1호)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하며, 접수된 입후보자의 서류를 검토한 후 하자가 없는 입후보자만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 등록한다.

② 등록서류의 하자가 발견된 때에는 등록마감일 익일 17:00까지 보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입후보자가 이를 게을리 하여 기일 내에 보정하지 아니하면 등록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5조 (후보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된 입후보자를 추첨에 의해 기호를 정하며 후보등록 마감 일로부터 2일 이내에 입후보자를 확정공고 하여야 한다.

#### 제16조 (입후보자 사퇴)

① 입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후보 사퇴서를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입후보자 사퇴는 투표 2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한

다.

③ 입후보 사퇴가 있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 입주사대표회의에서 추대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2005.3.8  
본항신설)

## 제 5 장 선 거 운 동

**제17조 (선거운동관리)**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선거운동의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선거운동기간)**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확정 공고 일로부터 투표전일 24:00까지로 한다.

### 제19조 (공고 등)

① 선거운동에 관련된 홍보물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규격, 수량 등을 규정한 양식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가 지정한 장소에 공고한다.

②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입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패찰을 달 수 있다.

### 제20조 (연설회 및 개인대담)

① 개인대담은 공개된 장소에서만 실시해야 하며, 입후보자의 가족을 포함하여 호별 방문을 통한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② 개인 대담 시에는 입후보자의 육성이외에는 어떠한 도구나 방송물을 이용할 수 없으며, 불법사항 발견 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즉각 제지를 해야 한다.

### 제21조 (금지사항)

① 선거운동 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입주사 등은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동 입주사 등 이외의 내·외부 단체의 지원을 받는 행위
2. 입주사 등의 권리행사를 저해하는 행위
3. 입후보자에 대한 중상모략이나 금품 등 수수행위
4.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각종 공고문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직·간접으로 타동 선거구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7. 기타 규약 및 본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

② 선거운동기간 중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 후 입주사 등에게 공지한다.

1. 경고
2. 시한부 선거운동의 금지
3. 입후보등록 취소

#### **제22조 (선거무효 결정)**

- ① 입주사 등의 권리행사 방해, 부정 등 선거관리에 중대한 저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무효 결정을 할 수 있다.
- ② 선거무효의 결정은 해당 선거구별로 할 수 있다.

### **제 6 장 선거인 명부**

**제23조 (명부 등재 요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자는 점유자로 한다. (2005.3.8 본조개정)

#### **제24조 (선거인 명부)**

-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고, 1부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
- ② 선거인명부는 선거 5일전 17:00까지 3일 이상 게시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 (선거인 명부 정정)** 선거인 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증빙자료에 의하여 수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정날인 또는 확정·배포하여야 한다.

### **제 7 장 투표와 개표**

#### **제 26조 (투표소 설치)**

- ①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설치한다.
- ② 투표소는 선거관리위원의 책임 하에 분할 설치할 수 있다.

#### **제27조 (투표용지)**

- ① 투표용지는 입주사대표회의 회장과 동별 입주사대표의 투표용지는 별도로 제작해서 교부한다.
- ② 투표용지(서식 제2호)는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를 대조한 후 수령인을 받고 교부한다. 단, 투표자가 투표용지를 수령한 후 투표소를 이탈하였을 때는 무효

로 하고 투표할 수 없다.

**제28조 (참관인)** 참관인은 투. 개표 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다. 단, 입후보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할 수 있다.

**제29조 (투표함의 확인)**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함의 이상유무를 참관인에게 확인시킨 후 투표 및 개표를 실시한다.

**제30조 (개 표)** 개표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행한다.

**제31조 (무효표)** 개표시 무효표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규 투표용지와 지정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선거관리위원장의 날인이 없는 것
3. 투표용지가 파손되어 확인 불가능한 것
4. 선출하는 동별 입주사대표의 수 이상의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
5. 기타 후보자가 불분명하게 기입된 경우

**제32조 (투표절차)**

- ① 선거인 명부와 대조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투표용지를 수령한다.
- ② 입주사 등은 지정된 장소에서 선거투표용지에 각각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제33조 (당선인의 확정)**

- ① 대표회의 회장을 선출은 입후보한 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참석 의결권의 다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본항개정 07.03.12)
- ② 동별 입주사대표 정수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 연기명투표하여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확정한다.
- ③ (본항삭제 07.03.12)
- ④ 당선자가 확정되면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장소에서 개표 결과를 선포하고 익일 까지 입주사 등에게 공고한다.

**제34조 (단일후보의 당선확정)**

- ① 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용지에 서명날인하여 의결

권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확정한다.

② 동별 입주사 대표 선거의 경우 정수이내 출마하면 입후보자 전체를 단일 후보로 보고 입주사 등의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당선을 확정한다.

② 동별 입주사 대표 선거의 경우 정수이내 출마하면 입후보자 전체를 단일 후보로 보고 선거 없이 입주사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당선을 확정 한다. <문구 수정><문구수정>(개정 : 2020. 03. 09)

**제35조 (투표용지 보관)**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공고 후 투표용지를 관리주체에 인계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제 8 장 이의신청

### 제36조(이의신청)

- ① 투. 개표 과정의 이의신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서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이의신청은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이의 신청자에게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 내용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를 할 수 있다.
  1.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재선거)
  2. 경고처분(입주사 등에게 공지)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서를 검토 또는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선거구 선거관리위원 및 관련자를 참고인으로 출석할 것을 입주사 등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때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판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제 9 장 선거사후 처리

**제37조 (재선거)**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확정되었을 경우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8조 (입후보 자격제한)** ①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결정의 원인을 야기한 후보자 및 그와 관련된 자는 재선거 입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② 법 또는 「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조항신설>(개정 : 2020. 03. 09)



③ 동대표 등 임원 입후보자의 검증절차 강화를 위해 국세, 지방세 완납 확인 된  
자로 한다.<조항신설>(개정 : 2020. 03. 09)

**제39조 (보궐선거)** 입주사대표회의 회장 및 동별 입주사대표의 사퇴 또는 징계해임  
으로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한 동에는 입주사대표회의 결의로 본 규정에 따라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제40조 (처 리)** 선거관리위원 및 기타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게을  
리 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준 용)** 당 단지의 각 선거에 관하여는 본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 부 칙

1. 본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정: 2003.03.24.)
2. 기 선출된 동별 입주사대표는 본 규정에 의거 선출한 것으로 한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 부 칙

1. 본 개정(안)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승인된 때로부터 시행한다. (2005.03.08)

#### 부 칙

1. 본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다. (2007.03.12)

#### 부 칙

1. 본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다. (2014.03.17)

#### 부 칙

1. 본 개정(안)은 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있다. (2020.03.09)